

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 건의

2019. 12. 12. 안건 제안 : 김진석, 박균성, 오승이, 이미경, 최한돈 위원(가나다순)

1.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규칙 해당 조문 : 제8조 제6항

제8조(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

-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·검토한다. 다만, 의장은 사법행정자 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·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.
-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
-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- 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,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⑦ 제3조제3항,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.
- 이 경우 "사법행정자문회의"는 "분과위원회"로, "의장"은 "위원장"으로 본다.

2. 개정 건의문 :

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,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 대법원장은 전국법 관대표회의에 각 분과위원회당 2인 이상의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.

3. 건의 이유:

- 현행 규칙 제8조 제3, 6항에서는 대법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·위촉하는데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여러 단체에 추천을 의뢰"할 수 있다"고 규정하여, 공개신청이나 추천 의뢰 자체가 대법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. 이는 대법원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함.
- 분기별로 정기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모든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는 없고, 현실적으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임. 실제로 일을 추진하



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사법행정 자문회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함. 이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일각의 우려처럼 사법행 정자문회의가 대법원장의 '들러리'나 '거수기'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.

- 모든 분과위원회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관인사분 과위원회 구성에서 전국법원장회의,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피추천인들을 "임명하도록"되어 있는 제10조와도 어울린다고 생각함.
- 모든 분과위원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, 적어도 적임자가 있는 경우 추천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 또한 이러한 방식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각 분과위원회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소통·협업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음.